

의안번호	2212863
의 퇴 인	김대식의원
회 답 일	2025.12.1.
추계번호	25B506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상습침수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상습침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상습침수지역 지정 후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의2(상습침수지역의 지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반복적인 도시침수로 인해 피해가 받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¹⁾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²⁾에 대한 정비대책, 침수방지시설 연계 및 도시침수예보 등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³⁾,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⁴⁾

-
-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상습침수지역”이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 3)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침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2.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 현재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를 선정 중이며([참고자료] 참조), 2026년 예산안에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함⁵⁾
-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⁶⁾,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점검 및 관리하고 있음⁷⁾

[표 1]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관련 예산 및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4	2025	2026 (안)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 (2653-300)	재해위험 지구정비	침수·유실·해일·고립 위험 등으로 발생할 각종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배수 펌프장, 제방 설치 및 관로개선 등 체계적 개선·정비	484,578	522,282	593,517
재해위험지역정비 (세종) (2638-302)			6,993	6,118	5,8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치수연구개발(5331-302)의 내역사업

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이 시행되어 별도의 상습침수지역이 지정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이 수립·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정되는 상습침수지역의 규모 및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개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배경

- 여름철 국지성 호우가 일상화되어 투수면적이 적은 도시지역의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구도심지는 정비가 어려워 대응에 한계
- 「도시침수방지법*」 시행(‘24.3)에 따라 도시하천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법정 계획(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필요

< 도시침수방지법 中 기본계획 관련 사항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구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구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5년 감사원 지적(도시침수 계획·사업 비연계로 비효율) 이후 관련 법안이 추진 되어왔으나, 폐기 반복

⇒ 기존대책(하천기본계획·하수도종합정비계획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대상지 선정 중(∼’25.12)

□ 「도시침수방지법」 관련 주요사항

구분	내 용
기본 원칙	▶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력 ▶ 도시침수 예보체계 구축, 비상대응방안 마련
기준강화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도시침수방지 계획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설계기준 등 원칙 제시
- 종합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수립주체 및 추진내용 제시

추진주체	추진내용	비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 강화	- 10년 주기(재검토 5년)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장 의견 청취 -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기후부장관 지자체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 공사방법에 관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등 작성	- 의제처리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 강화 가능